

계약해지요구서

현대카드(주) 귀중

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①적합성원칙, ②적정성원칙, ③설명의무, ④불공정영업행위 금지, ⑤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

회원명	
생년월일	
주소	
연락처	
위법 사실의 내용 (증복 체크 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 제17조 제3항 적합성원칙 위반 <input type="checkbox"/> 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 제18조 제2항 적정성원칙 위반 <input type="checkbox"/> 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 제19조 제1항, 제3항 설명의무 위반 <input type="checkbox"/> 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 제20조 제1항 불공정영업행위금지 위반 <input type="checkbox"/> [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] 제21조 부당권유금지 위반
구체적 위반 사실	(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첨부 필요)
신청일	
처리 기간	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

※ 계약해지 불가 사유

- 위반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
-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
-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
-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위반 사실이 있음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,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. 다만,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란 1.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 여부를 통지 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, 2. [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] 위반 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해지 요구의 수락 여부 통지 기한을 연장한 경우.

본인은 위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: (서명/인)

Hyundai Card